

2023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
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소부장)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10일

한국표준협회 회장

■ 수정사항(밑줄 부분 추가)

※ (2페이지) 3.2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: * 신청기업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2021/2022년도 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- * 2022년 사업에서 선정된 개별과제가 종료되지 않은 기업도 2022년 개별과제 종료일 이후 시점으로 20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, 금번 공고에 선정되는 과제가 2023년 내에 착수되어야 함
- (지원인원) : * 본 사업은 자문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전문가가 동일 부서 소속 가능

1. 사업목적

- 「융합혁신지원단* 공공연」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을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*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8개 공공연으로 구성된 협의체(소부장 특별법 제28조)

2. 관련법령 및 규정

2.1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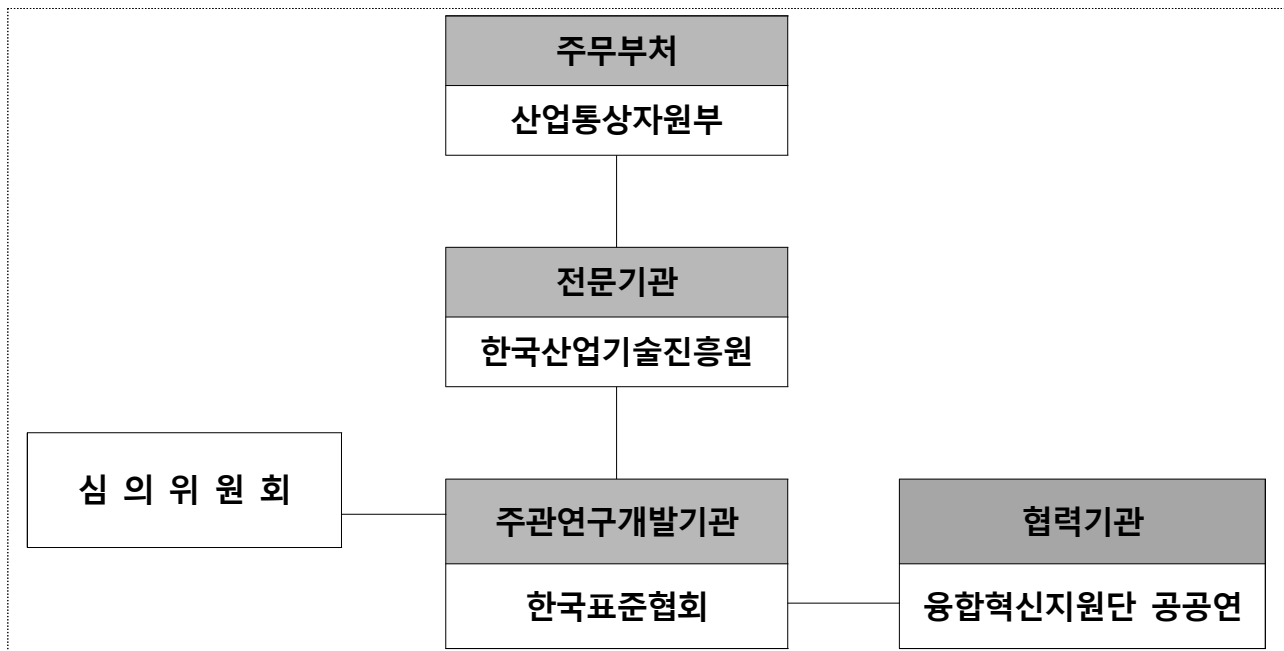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(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), 제40조(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)

2.2 공통규정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

3. 사업내용

3.1 추진체계



3.2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·중견기업
 - *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(으뜸기업,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)
 - * 2021, 2022년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중복신청 가능함
 - * 신청기업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2021/2022년도 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 - * 2022년 사업에서 선정된 개별과제가 종료되지 않은 기업도 2022년 개별과제 종료일 이후 시점으로 20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, 금번 공고에 선정되는 과제가 2023년 내에 착수되어야 함
- (지원내용) 생산성·품질 향상, R&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

- (지원인원) 기업당 1명 (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)
 - *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
 - *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
 - * 기업 內 부서가 다를 경우, 중복지원 가능(단, 본부 단위가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)
 - * **본 사업은 자문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전문가가 동일 부서 소속 가능**
- (지원기간) 최소 4개월 ~ 최대 1년
 - *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신청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
 - * 자문횟수 : **1개월 기준 최소 4회 최대 8회**까지 산정 가능하며, 수행기간 내 월별 최저 자문 횟수 기준 없이 자문 일정 수립하여 진행 가능
- (지원규모)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%, 중소기업 67%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
 - * 자문수당의 경우,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나, **1MD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급가능함**
 - * 자문수당은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(한국표준협회)에서 해당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개인수당(기타소득) 형태로 자문인력에 직접 지급함(지급 방식은 별도 협의)
 - * 공공연구기관에서 자문비용 지급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게 되는 경우 총 자문비용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 간접비로 추가 지급 가능함
 - * 자문인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, 기존 참여 과제의 수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문 병행 가능함

※ 소재·부품·장비 :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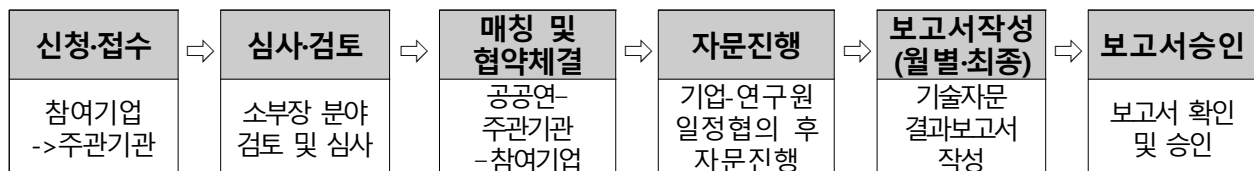
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업종

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제1호에 근거한 기업

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

3.3 추진절차



4. 신청방법

4.1 신청기간 : 2023년 9월 6일(수)까지 접수

- * 1차 접수기한이며, 예산소진 시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 할 수 있음
- ** 1차 접수완료한 신청 건에 대해 평가협약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시, 2차 공고 예정임

4.2 신청방법
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
 - 조광래 연구원(Tel : 02-6240-4874 Email : grcho@ksa.or.kr)

5. 제출서류

구분	번호	제출서류	기업	기관
필수 서류	1	기술자문 신청서 (서식1-①), 기술자문 계획서(서식1-②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및 청렴 서약서(서식1-③) ※ 신청양식 내 기업·기관별 해당 내용 작성, 서식 1-③은 기업·기관 대표자, 사업 책임자, 자문인력 개별 작성하여 제출	해당	해당
	2	사업자등록증 사본	해당	-
	3	법인등기부등본	해당	-
	4	최근 3개년도('20~'22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	해당	-
	5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귀속연월 : '20.12, '21.12, '22.12 세무서 발행본) ※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	해당	-
	6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(국세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(지방세) 정부24	해당	-
	7	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	해당	-
해당 시	8	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	해당	-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파일로 저장하여 제출(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)

※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6. 선정방법

6.1 평가방법

- (서면심사) 기업지표(안정성), 적합성 지표(프로젝트 적합성·구체성, 자문인력 활용성·효과성, 기대효과 등), 우대 가산점 등
 - (선정기준) 서면심사 결과 기업지표(30점)+적합성 지표(70점) 합산 70점 이상인 기업
 - * 가산점 별도 부여(최대 4점) ('우대가점' 참조)
- (심의위원회) 서면심사 기준을 충족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며,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·개최
 - *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(으뜸기업,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)

6.2 우대가점 (최대 4점)

-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(2점) /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(2점)

7. 유의사항

7.1 지원제외
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분야가 아닌 기업
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별표1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신청기업이 아래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
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)
 -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8. 문의

-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
 - 조광래 연구원(Tel : 02-6240-4874 Email : grcho@ksa.or.kr)
 - 이승정 위원(Tel : 02-6240-4875 Email : lsj@ksa.or.kr)

별첨
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

순번	기관분류	기관명	순번	기관분류	기관명
1	기초소재	한국화학연구원*	24	모듈·부품	한국자동차연구원*
2		한국과학기술연구원	25		한국생산기술연구원
3		FITI시험연구원	26		건설기계부품연구원
4		다이텍연구원	27		대구기계부품연구원
5	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28		한국산업기술시험원
6		한국섬유소재연구원	29		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
7		한국신발피혁연구원	30	시스템·장비	한국기계연구원*
8	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31		한국원자력연구원
9		한국탄소산업진흥원	32		한국전기연구원
10		한국의류시험연구원	33		한국항공우주연구원
11		한국섬유개발연구원	34	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12		KOTITI시험연구원	35	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13	응용소재	한국재료연구원*	36	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14		포항산업과학연구원	37		한국나노기술원
15		한국세라믹기술원	38		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16		한국지질자원연구원	* 5대 분야 대표 연구기관		
17	고등기술연구원				
18	전자부품	한국전자기술연구원*			
19		한국광기술원			
20	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		
21		한국전자통신연구원			
22		나노종합기술원			
23	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			